



시행세칙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세칙


문서번호	TWI-A401-2		
제정일자	2012. 06. 04.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1/8

목 차

- 제1장 총칙
- 제2장 설치 및 운영
-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 제4장 조사의 원칙
- 제5장 기타
- 부칙

작성부서	산학협력단	제정일자	2012. 06. 04.
------	-------	------	---------------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직 책							
서 명							
일 자							

	시행세칙	문서번호	TWI-A401-2	
		제정일자	2012. 06. 04.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세칙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동원대학교 연구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때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연구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동원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에 연구진실성위원회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세칙은 연구비 조성여부와 관계없이 이 대학교에서 이루어진 연구활동과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와 교직원에게 대해서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 나.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다. 다른 사람에게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라.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2.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라 함은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논문, 특허 및 아이디어 등 지적결과물 또는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이 대학교 또는 연구지원 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7.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이 대학교 및 연구지원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시행세칙	문서번호	TWI-A401-2	
		제정일자	2012. 06. 04.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세칙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8.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9.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10.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의2 (연구자의 의무) 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진실되게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설치 및 운영

제4조 (기능)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 대학교에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결정 및 조사결과에 대한 승인에 대한 사항
3. 예비조사위원 및 본조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4. 재심의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6.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의2 (주관부서) 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주관부서는 산학협력단으로 한다.


제5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세칙		문서번호	TWI-A401-2	
			제정일자	2012. 06. 04.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세칙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학협력단 연구담당 직원이 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위원)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9조 (접수)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산학협력단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보할 수 있다.

②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0조 (예비조사) ① 위원회는 관련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3명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④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익명제보인 경우 예외)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관련 증거 자료

	시행세칙		문서번호		TWI-A401-2	
			제정일자		2012. 06. 04.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세칙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6/8

제11조 (본조사)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본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4명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인사를 2명 이상 위촉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익명제보인 경우 예외)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6. 본조사위원회 명단
7. 그 밖에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본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2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경우 총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한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이 대학교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다고 의결한 때에는 총장에게 당해 제보자의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의2 (판정) ① 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이를 심의하고 조사결과를 확정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표결한다.

제13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시행세칙		문서번호	TWI-A401-2	
			제정일자	2012. 06. 04.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세칙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제14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불복이유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조사의 원칙

제15조 (절차적 권리보장)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 주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고지해 주어야 한다.

제16조 (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피조사자와 제보자는 조사·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밝혀 해당 위원의 기피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 (출석 및 자료요구) ① 조사 시 필요에 따라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등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한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② 조사 시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존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의 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비밀의 유지 등) ①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요구 등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각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총장 및 관계 교직원은 조사·심의·의결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 (제보자보호) 위원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시행세칙		문서번호		TWI-A401-2	
			제정일자		2012. 06. 04.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세칙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8/8

제5장 기타

제19조의2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는 연구지원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의3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산학협력단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

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0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준용)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